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8. 5. 6.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4월 20일 박정자 의원외 8인
-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4월 2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8년 5월 1일 제5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정자 의원)

#### 가. 제안이유

- 대통령령 제14662호 개정과 대통령령 제15680호에 의한 공무원여비규정의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우리구 의회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국외여비중 숙박료의 현실화(평균 5% 인상)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 급	현재지급액 (1야당)	개정후 지급액 (1야당)	비 고
의 장 부의장	가	130	137	
	나	90	99	
	다	72	76	
	라	62	65	
의 원	가	114	120	
	나	74	78	
	다	55	58	
	라	46	51	

- 국내여비중 숙박료의 현실화(의원 평균 13% 인상)

(단위 : 원)

구 분	현재 지급액 (1야당)	개정후 지급액 (1야당)	비 고
의 원	19,500	22,000	

○ 조문변경

- 제7조 제1항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비고란 제4호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동항 “공무원국내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변경
- 제7조 제2항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비고란 제3호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공무원국외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변경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준석)

박정자 의원의 8명의 발의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8년 2월 28일자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이를 통합 단일 법령으로 개정되면서, 우리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여비단가 등을 조정하고 국가 및 도시별 여비지역 등급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국외여비중 숙박비를 현실화하여 평균 5% 인상하고 국내여비중 의원의 숙박비를 평균 13% 인상, 19,500원을 2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제7조 제1항 별표1과 제7조 제2항 별표2의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공무원국내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국가 또는 도시별 여비지역 등급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국외여비와 국내여비의 숙박비를 현실화하여 다소 인상 조정하고 국가별, 도시별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여비지역 등급을 조정한 것으로 보아 박정자 의원의 8인의 의원이 발의 제안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6
----------	-----

발의년월일 : 1998년 4월 20일

발의자 : 박정자 의원의 8인

1. 제안이유

대통령령 제14662호 개정과 대통령령 제15680호에 의한 공무원여비규정의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우리구의회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국외여비중 숙박료의 현실화(평균 5% 인상)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 급	현재지급액 (1야당)	개정후 지급액 (1야당)	비 고
의 장 부의장	가	130	137	
	나	90	99	
	다	72	76	
	라	62	65	
의 원	가	114	120	
	나	74	78	
	다	55	58	
	라	46	51	

나. 국내여비중 숙박료의 현실화(의원 평균 13% 인상)

(단위 : 원)

구 분	현재 지급액 (1야당)	개정후 지급액 (1야당)	비 고
의 원	19,500	22,000	

다. 조문변경

- 제7조 제1항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비교란 제4호 “국내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  
으로”, 동항 “공무원 국내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변경
- 제7조 2항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비교란 제3호 “국외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  
으로 “공무원 국외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변경

라. 국가 또는 도시별 여비지역 등급 일부 조정

“별첨 참조”

##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나. 국외여비규정(대통령령 제14662호 개정 내용 참조)

다.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15680호 개정 내용 참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의원 숙박료란 1야당 “19,500”을 “22,000”으로 제7조 제1항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비고란 제4호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동항 “공무원 국내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중 숙박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박비 (1야당)			
가	등	급	1 3 7
나	등	급	9 9
다	등	급	7 6
라	등	급	6 5
가	등	급	1 2 0
나	등	급	7 8
다	등	급	5 8
라	등	급	5 1

제7조 제2항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비고 제1호 가목중 “스톡홀름”을 “마드리드”로 하고, 동호 나목의 (1)중 “파푸아뉴기니아” 다음에 “싱가포르, 대만, 북경, 하노이”를 추가하며, 동목의 (2)중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삭제하고, 동목의 (3)중 “헝가리” 다음에 “덴마크, 체코”를 추가하며, 동호 다목의 (1)중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중화민국”을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로 하고, 동목의 (2)중 “수리남”을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로 하며, 동목의 (3)중 “덴마크” 및 “체코”를 각각 삭제하고, 동목의 (4)중 “나이지리아”를 삭제하며, 동호 라목의 (1)중 “인도네시아”를 삭제하고, “버마”를 “미얀마”로 하며, 동목의 (2)중 “아르헨티나”를 “수리남”으로 하고, 동목의 (4)중 “북예멘”을 “예멘”으로 하며, “탄자니아” 다음에 “나이지리아”를 추가한다.

제7조 제2항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비고 제3호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공무원 국외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제1항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0%;">일 비 (1야당)</th> <th style="width: 20%;">숙 박 료 (1야당)</th> <th style="width: 20%;">식 비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의 장 부의장</td> <td>10,000</td> <td>41,000</td> <td>25,000</td> </tr> <tr> <td>의 원</td> <td>10,000</td> <td><u>19,500</u></td> <td>18,000</td> </tr> </tbody> </table> <p>제7조 제1항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비고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 있다.</p> <p>제7조 제2항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숙 박 비 (1야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60%;">가 등 급</td> <td>1 3 0</td> </tr> <tr> <td>나 등 급</td> <td>9 0</td> </tr> <tr> <td>다 등 급</td> <td>7 2</td> </tr> <tr> <td>라 등 급</td> <td>6 2</td> </tr> <tr> <td>가 등 급</td> <td>1 1 4</td> </tr> <tr> <td>나 등 급</td> <td>7 4</td> </tr> <tr> <td>다 등 급</td> <td>5 5</td> </tr> <tr> <td>라 등 급</td> <td>4 6</td> </tr> </tbody> </table> <p>제7조 제2항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모스크바</p>	구분	일 비 (1야당)	숙 박 료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0,000	41,000	25,000	의 원	10,000	<u>19,500</u>	18,000	숙 박 비 (1야당)		가 등 급	1 3 0	나 등 급	9 0	다 등 급	7 2	라 등 급	6 2	가 등 급	1 1 4	나 등 급	7 4	다 등 급	5 5	라 등 급	4 6	<p>제7조 제1항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0%;">일 비 (1야당)</th> <th style="width: 20%;">숙 박 료 (1야당)</th> <th style="width: 20%;">식 비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의 장 부의장</td> <td>10,000</td> <td>41,000</td> <td>25,000</td> </tr> <tr> <td>의 원</td> <td>10,000</td> <td><u>22,000</u></td> <td>18,000</td> </tr> </tbody> </table> <p>제7조 제1항 별표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비고                      1. &lt;현행과 같음&gt;                      2. &lt;현행과 같음&gt;                      3. &lt;현행과 같음&gt;                      4.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 ..... 있다.</p> <p>제7조 제2항 별표2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숙 박 비 (1야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60%;">가 등 급</td> <td>1 3 7</td> </tr> <tr> <td>나 등 급</td> <td>9 9</td> </tr> <tr> <td>다 등 급</td> <td>7 6</td> </tr> <tr> <td>라 등 급</td> <td>6 5</td> </tr> <tr> <td>가 등 급</td> <td>1 2 0</td> </tr> <tr> <td>나 등 급</td> <td>7 8</td> </tr> <tr> <td>다 등 급</td> <td>5 8</td> </tr> <tr> <td>라 등 급</td> <td>5 1</td> </tr> </tbody> </table> <p>제7조 제2항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마드리드, 동경, 홍콩, 모스크바</p>	구분	일 비 (1야당)	숙 박 료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0,000	41,000	25,000	의 원	10,000	<u>22,000</u>	18,000	숙 박 비 (1야당)		가 등 급	1 3 7	나 등 급	9 9	다 등 급	7 6	라 등 급	6 5	가 등 급	1 2 0	나 등 급	7 8	다 등 급	5 8	라 등 급	5 1
구분	일 비 (1야당)	숙 박 료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0,000	41,000	25,000																																																										
의 원	10,000	<u>19,500</u>	18,000																																																										
숙 박 비 (1야당)																																																													
가 등 급	1 3 0																																																												
나 등 급	9 0																																																												
다 등 급	7 2																																																												
라 등 급	6 2																																																												
가 등 급	1 1 4																																																												
나 등 급	7 4																																																												
다 등 급	5 5																																																												
라 등 급	4 6																																																												
구분	일 비 (1야당)	숙 박 료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0,000	41,000	25,000																																																										
의 원	10,000	<u>22,000</u>	18,000																																																										
숙 박 비 (1야당)																																																													
가 등 급	1 3 7																																																												
나 등 급	9 9																																																												
다 등 급	7 6																																																												
라 등 급	6 5																																																												
가 등 급	1 2 0																																																												
나 등 급	7 8																																																												
다 등 급	5 8																																																												
라 등 급	5 1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나. 나등급</p> <p>(1) 아세아주,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p> <p>(2) 남, 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u>트리니다드토바고</u>, 자메이카</p> <p>(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p> <p>(4) 중동 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p> <p>다. 다등급</p> <p>(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u>싱가포르</u>, <u>브루나이</u>, 필리핀, 타이, <u>중화민국</u>,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p> <p>(2) 남, 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p> <p>(3) 유럽주 - <u>덴마크</u>, 아일랜드, 포르투갈, 회랍, <u>체코</u>,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p> <p>(4) 중동, 아프리카 - <u>요르단</u>,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u>나이지리아</u>,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p> <p>라. 라등급</p> <p>(1) 아세아주, 대양주 - <u>인도네시아</u>, <u>버마</u>, 스리랑카, 휘지, 네팔, 몽골</p> <p>(2) 남, 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과이, <u>아르헨티나</u></p> <p>(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p> <p>(4) 중동, 아프리카 - 레바논, <u>북예멘</u>,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p> <p>2. 생략</p> <p>3. <u>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u> .....</p> <p>개정되기까지는 <u>공무원국외여비</u> .....</p> <p>.....있다. (신설 94. 8. 3)</p>	<p>나. 나등급</p> <p>(1) 아세아주,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u>싱가포르</u>, <u>대만</u>, <u>북경</u>, <u>하노이</u></p> <p>(2) 남, 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자메이카</p> <p>(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u>덴마크</u>, <u>체코</u></p> <p>(4) 중동, 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p> <p>다. 다등급</p> <p>(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u>브루나이</u>, <u>필리핀</u>, 타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p> <p>(2) 남, 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u>트리니다드토바고</u>, <u>아르헨티나</u></p> <p>(3) 유럽주 - 아일랜드, 포르투갈, 회랍,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p> <p>(4) 중동, 아프리카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p> <p>라. 라등급</p> <p>(1) 아세아주, 대양주 - <u>미얀마</u>, 스리랑카, 휘지, 네팔, 몽골</p> <p>(2) 남, 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u>수리남</u></p> <p>(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p> <p>(4) 중동, 아프리카 - 레바논, <u>예멘</u>,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u>나이지리아</u></p> <p>2. &lt;현행과 같음&gt;</p> <p>3. <u>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u> .....</p> <p>개정되기까지는 <u>공무원여비규정</u> .....</p> <p>.....있다. (신설 94. 8. 3)</p>